

# 우리나라에서 주택 거래의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.



**이러한 차별의 근절을 위해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반응을 알아 두십시오.**

- “우리는 아이들을 받지 않습니다.”
- “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아파트는 이미 임대가 되었습니다.”
- “우리는 십대들을 받지 않습니다.”
- “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.”
- “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”
- “광고는 잘못된 겁니다. 실제 임대료는 75달러 더 높아요.”

**주택 거래의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신고입니다.**

**www.hud.gov/fairhousing** 에 방문하시거나 주택도시개발부 핫라인  
**1-800-669-9777** (음성) **1-800-927-9275** (TTY)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미주택도시개발부와 전국공정주택거래연합이 함께 하는 공익 메시지입니다. 연방  
공정주택거래법은 인종, 피부색, 종교, 국적, 성별, 가족 조건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 
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[www.hud.gov/fairhousing](http://www.hud.gov/fairhousing) 을 참조하십시오.

**NFHA**  
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